

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수검 안내문

항공안전법에 의거 안전성인증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안전성인증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초도 및 정기(또는 수시)인증을 받아야 하며, 불합격 통보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는 재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합니다.

- *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
“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”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업무
- * 안전성인증 관련 법령 및 기준
「항공안전법」 제124조 (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), 제166조 (과태료)
「국토교통부 고시」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
「항공안전기술원 세칙」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

□ 안전성인증 안내

| 안전성인증 구분 | |
|----------|---|
| 초도인증 | 국내에서 설계/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|
| 정기인증 |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정기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|
| 수시인증 |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|
| 재인증 | 초도,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, 작업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|

※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: 영리용(사업용) 1년, 비영리용(비사업용) 2년

□ 안전성인증 수검

-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회원들께 전파하여 주시고, 안전성인증 수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□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인증 담당부서 (주소 및 연락처)

- 항공인증본부 항공기인증실
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-30 로봇 R&D센터 1층 및 2층 (032-727-5877)
- 안전성인증 웹사이트(안전성인증 정보/신청서식/안내사항 등) : www.safeflying.kr

별첨 1

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

| 종류 | 정의 | 구분 | 안전성인증 대상 및 기준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|
| 동력 비행장치 |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인증대상 및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 비행장치 | 타면조종형 비행기 | 1. 탑승자,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2. 좌석이 1개일 것 |
| | | 체중이동형 비행기 | |
| 행글라이더 | 체중이동,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| 행글라이더 | 1.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일 것 2.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|
| 패러글라이더 |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| 패러글라이더 | 1.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일 것 2.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|
| 기구류 | 기체의 성질·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 | 유인자유기구 | 1.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 2. 무인자유기구는 해당 무 |
| | | 무인자유기구 | |
| | | 계류식(繫留式) 기구 | |
| 무인 비행장치 |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증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| 무인 동력 비행 장치 | 1.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2.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 3.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 |
| | | 무인 헬리콥터 | |
| | | 무인 멀티콥터 | |
| | | 무인비행선 | 1.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2.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, 180kg 이하인 것 3. 길이가 7m를 초과하고, 20m이하 인 것 |
| 회전의 비행장치 |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| 초경량 헬리콥터 | 1. 탑승자,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2. 좌석이 1개일 것 |
| | |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| |
| 동력패러글라이더 |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| 착륙장치 “유” | 1.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2. 탑승자,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3. 좌석이 1개일 것 |
| | | 착륙장치 “무” | 1.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|
| 낙하산류 |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| 낙하산 | 1.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|

[관련법령]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(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) 및 제305조(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)